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[의견표명]

□ 민원 제목 : 옥외간판 추인허가 요청

□ 신청 취지

- OO동 △△-▽▽ 일원에 신축한 건축물에 병원 옥외간판을 설치한 상태로,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나, 이미 설치한 옥외간판에 대하여 추인 허가 또는 심의해줄 것을 요청함.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해당 광고물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및 허가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고, 인근 병원에서 민원신고 접수된 사항임.

□ 사실관계

○ 민원경위

- 2023. 2. 6. :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(OO동 △△-▽▽ 일원에 공사중인 신축 건축물 간판이 심의 득하였는지 여부 질의)
- 2023. 2. 7. : 옥외광고업자 → 시흥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
(옥외간판 3개 중 1개만 신청)
- 2023. 2. 10. - 2. 13. : 경관디자인과 2023년 제1회 시흥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(원안 가결 : 5명 적정, 1명 조건부 적정, 1명 부적정)
- 2023. 4. 7. : 민원인 시민호민관 고충민원 접수(나머지 2개에 대한 추인허가 요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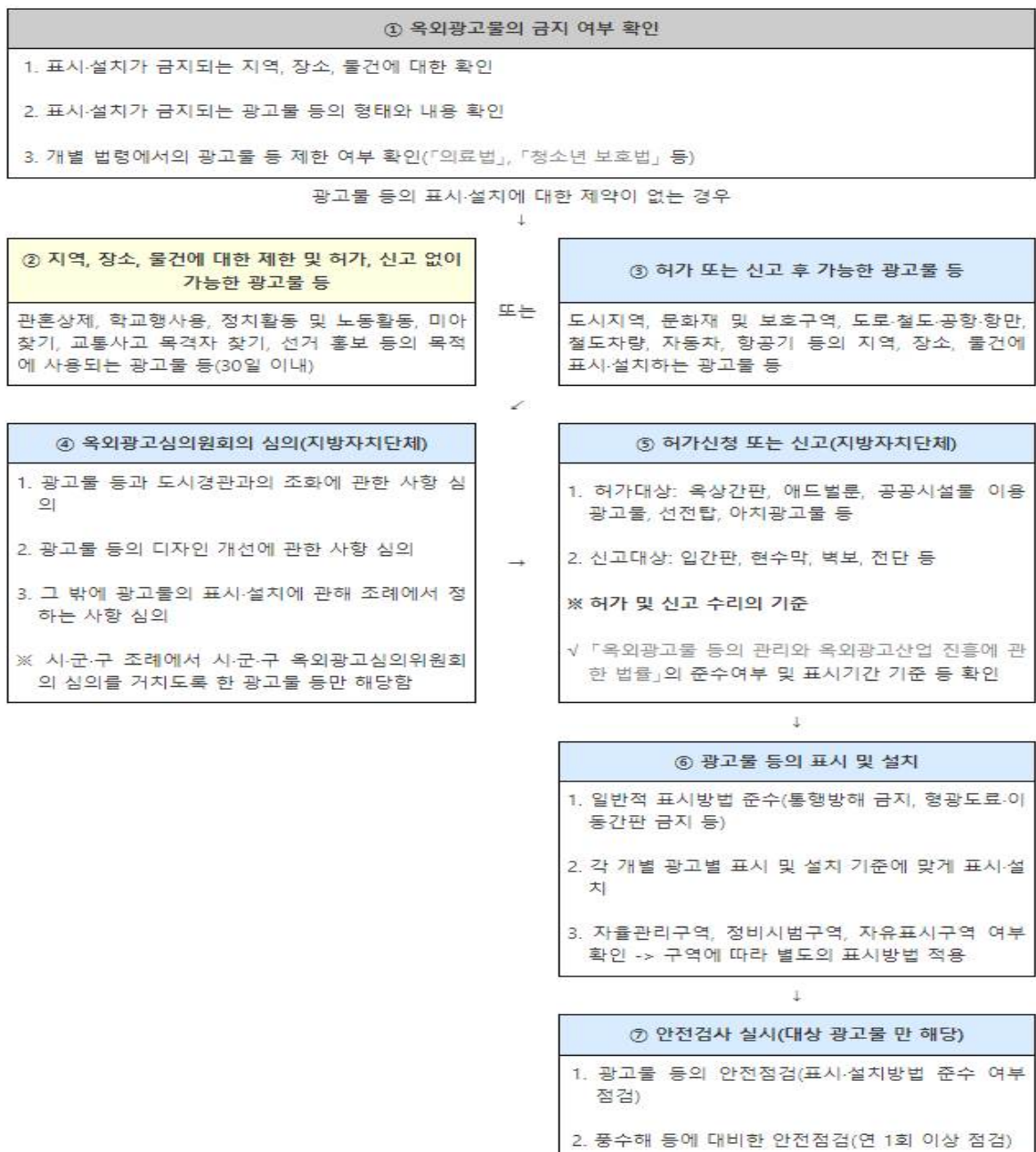
□ 관계 법령 등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제1호 및 제5호
- 「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6조

□ 판단 및 결론

○ 옥외광고물 설치 과정

■ 옥외광고물 설치절차 개관



○ 호민관 판단

- 원칙적으로는 옥외간판 설치 전에 위 설치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.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허가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광고업자의 실수 및 착오로 순서가 바뀜(광고업자 잘못된 점 인정 및 반성하고 있음).
- 옥외간판 3개 중 1개는 심의 거쳤으나, 아직 심의 거치지 않은 2개는 떼었다가 붙이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(크레인 1일 사용 및 인건비 등), 어차피 거의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맞게 간판을 다시 붙일 예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이중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됨.
- 병원이 이미 개업하여 환자들이 지나다니고 있음(크레인차 동원 및 떼는 작업 시 안전 문제).
- 2023. 1월 ~ 4월 시흥시 ◇◇동, □□동 불법광고물 양성화 특별기간 상반기 운영 중(시범운영)인 상황 참작.

○ 호민관 결정

- ○○○○○○병원은 2023. 2월경, 경기도 시흥시 ○○동 △△-▽▽번지에 신축 및 준공하면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착오로 인하여 옥외간판 2개를 먼저 설치하는 등 「옥외광고물법」상 순서가 바뀌었고, 이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자가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,
- 옥외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는 영세사업자로, 현재 설치된 옥외간판을 철거 및 설치하는 비용(크레인 사용 및 인건비 등)이 많이 들고, 이미 설치된 옥외간판과 거의 동일하게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,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임.
- 이에 시민호민관은 병원이 개업하여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으로, 옥외간판 철거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시흥시에서 2023. 1월 ~ 4월 ◇◇동, □□동 불법광고물 양성화 특별기간을 상반기 시범운영 중인 상황을 참작하여, 옥외광고사업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, 「옥외광고물법」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지금까지도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이행할 것과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의견표명 함.